

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5G 융합제품에 내장되는 5G 핵심부품(5G RF 부품: 데이터 송수신 안테나)은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고 있으며, 5G 핵심부품은 초고속·초연결(다중연결)·광대역 등 5G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 요소
- 나. 이에 5G 핵심부품 개발과 국산화 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장세용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500,000천원(도비 250,000천원, 시비 250,000천원)

※ 2차년도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

나. 주요 사업

- (1) 사업명 :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9. 4월 ~ 2021. 12월(2년9개월)
- 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- (4) 총사업비 : 100억원 [국비90, 도비5, 시비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
		'19년	'20년	'21년
계	100	30	35	35
국 비	90	30	30	30
도 비	5	-	2.5	2.5
시 비	5	-	2.5	2.5

- (5) 추진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상북도, 구미시
- 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 - 5G용 28/38GHz 핵심 IP(전력 증폭기, 저잡음 증폭기, 위상 천위기, 스위치) 설계 및 검증
 - 28/38GHz mm-Wave Array 안테나 설계
 - 5G Array 안테나 완성품제작
 - 5G 밀리미터파 통신모듈 개발 및 검증
 - 5G 원천 부품 적용된 5G+WAN to Wi-Fi (802.11AX) CPE 개발 고도화 및 검증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8. 8. : 5G융합산업 육성 예산 반영 건의
- 2018. 8. : 5G 연구개발과제 예산 배정
- 2018. 10. : '19년 신규 R&D 기획 논의 및 RFP 제안서 도출
- 2018. 10. : '19년 신규 후보과제(RFP) 인터넷 공시
- 2018. 12. : 과제 세부기획 및 컨소시엄 구성
- 2019. 3. : 수행기관 평가 및 사업자 선정
- 2019. 4. : 사업협약 및 추진
- 2020. : 5G용 28/38GHz 핵심 IP 개발 및 성능 개선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5G 핵심부품은 외산 의존도가 높고, 현재 대기업(삼성, LG) 중심으로 공급되어 중소기업의 수급까지는 향후 1~2년 예상
- (2) 연구기관을 통하여 5G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하며, 5G 핵심부품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타 지역대비 구미 지역기업의 융합제품 개발 선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7조

(3)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

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

제7조(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,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
2.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
3.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

촉진에 관한 사항

4. 정보통신기술의 협력,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
5.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
6.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
7.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
8.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
9.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
제32조(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) ① 과학

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
2.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대학·정부출연연구기관,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·알선 지원

4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·보급
5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·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
6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
7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
8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활용
9.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·홍보·활용
10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
11.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관련 시범사업
12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·단체에 위탁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지영목
	담 당	채창수
	담 당 자	이선영 (480-6173)